

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4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11월 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)

- 10년 유지된 관람료를 국내유일의 체험형 탐방동굴 운영형태에
적정한 관람료로 인상 추진
- 폐관 및 일반재산 관리이전된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체험관 명칭 및
관람료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
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를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 기존 개인은 10,000원에서 15,000원으로
단체는 7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변경
어른의 경우 기존 개인은 15,000원에서 20,000원으로
단체는 10,000원에서 15,000원으로 변경하여

10년간 유지해온 관람료 이번에 인상하는 것으로
인상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,
10년간 물가상승비와 탐사복 착용, 해설사 동반 등
체험장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[별표 1]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를
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15,000원에서 1,4000원으로,

단체 10,000원에서 9,000원으로

어른은 개인 20,000원에서 18,000원으로,

단체 15,000원에서 14,000원으로 변경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의 “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“백룡동굴”이라 한다),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(이하“생태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“백룡동굴”이라 한다)”이라고 한다.

제2조제3호의 “백룡동굴과 생태관을”을 “백룡동굴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의 “생태관 및 백룡동굴”을 “백룡동굴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제4호의 “생태관 또는 백룡동굴”을 “백룡동굴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1]

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(제5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4,000	9,000
어 른	18,000	14,000

※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시설물"이란 <u>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"백룡동굴"이라 한다),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(이하 "생태관"이라 한다),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, 동강스카이라인 등 평창군에서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3. "관람료"란 <u>백룡동굴과 생태관</u>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"백룡동굴"이라 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----- 백룡동굴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관람시간) ① <u>생태관 및 백룡동굴의</u>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관람시간) ① 백룡동굴의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 환불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생태관 또는 백룡동굴, 시설</u> 운영측의 사정으로 관람 및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제18조(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 환불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백룡동굴,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</u>(제5조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개 인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단 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</td> <td>10,000</td> <td>7,000</td> </tr> <tr> <td>어 른</td> <td>15,000</td> <td>1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</u>(제5조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개 인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단 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</td> <td>1,5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tr> <td>어 른</td> <td>2,000</td> <td>1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</p>	구 분	개 인	단 체	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0,000	7,000	어 른	15,000	10,000	구 분	개 인	단 체	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,500	1,000	어 른	2,000	1,500	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</u>(제5조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개 인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단 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</td> <td>14,000</td> <td>9,000</td> </tr> <tr> <td>어 른</td> <td>18,000</td> <td>14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</p> <p><표 삭제></p>	구 분	개 인	단 체	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4,000	9,000	어 른	18,000	14,000
구 분	개 인	단 체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0,000	7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 른	15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개 인	단 체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,5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 른	2,000	1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개 인	단 체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4,000	9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 른	18,000	1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